

주차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 캠퍼스내(이하"교내"라 한다)의 차량주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차량교통관리"라 함은 차량의 교내출입과 주차 및 운행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내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준수사항) 교내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모든 운전자는 본교의 관련 지침과 방침(부제 운영 등)에 따라야하며, 관계 종사자의 안내와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징수) 교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한다(별표 서식).

제6조 (업무관장) 주차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제7조 (출입증 등)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에 출입증, 인식표 또는 주차증 등을 부착시키거나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내주차) ① 교내 주차는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한하며, 다른 차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어떠한 차량도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범칙금의 3배를 부과 한다.

③ 교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내에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주차구역과 그 관리기관(부서)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교내운행) ① 교내에서는 시속 1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경적을 울리거나 기타 연구와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입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교내의 각 출입구에 차량 통제소 및 통제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 ① 주차 위반 시에는 1차 경고(경고장)하고, 30분경과 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1만원)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한 달간 교내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여 방치된 차량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④ 기타 이 지침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내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귀책사유) ① 주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본 관리지침 및 이용수칙을 준수 하여야한다

② 이용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간주 한다.

③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본교 내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주차된 차량내에 현금 및 귀중품을 둘 수 없으며 이를 분실 시에는 본교에서 변상하지 아니하며 차량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개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차 요금표[전문개정 2017.11.4.]

유형번호	구분	주차요금	유형별 대상 차량	비고	
1	공용차량	무 료	학교위탁기관 차량	등록증확인	
2	공공업무수행차량	무 료	입학 및 졸업식 등, 행사 출입차량, 응급차량, 청소(쓰레기수거) 차량, 우편물, 소방용차량, 공무수행차량(관공서로고부착) 출입기자용차량,	등록증 또는 로고확인	
3	학교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무 료	법인 이사진 차량, 초빙강사 차량, 학교발전기금 업무수행 차량, 장학금관련 업무수행 차량, 학생취업관련업무 수행차량, 구매물품 납품 및 A/S 차량, 관광버스 등 학교인원 수송을 위한 차량, 교내 공사용 차량, 은행 현금수송 차량, 기타 학교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특송업체, 총학생회 행사, 동아리지도차량		
4	장애인용교직원 및 학생차량	무 료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동승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교직원, 학생차량		
5	교직원 및 이에 준 하는 차량	40,000/학기	교직원, 전임대우교원, 외국인교원, 명예교수, 법인직원, 주당3일 이상 강의가 있는 시간강사, 복지관 직원		
6	시간강사 차량	20,000/학기	주당 2일 이내 강의가 있는 시간강사 차량		
7	대학원생 및 동문 차량	60,000/학기	주당 3일이상 등교(방문)하는 대학원생(동문) 차량	본인 및 직계 가족 소유 차량	
		30,000/학기	주당 2일이내 등교(방문)하는 대학원생(동문) 차량		
8	학부생 및 평생교육원생 차량	60,000/학기	주당 3일이상 등교하는 학부생(평생교육원생) 차량		
		30,000/학기	주당 2일이내 등교하는 학부생(평생교육원생) 차량		
9	주 1회 학생	10,000/학기	주1회 등교하는 학부생, 대학원, 평생교육원생 차량		
10	관련업체차량	70,000/학기	교내 임대운영 업체 종사자 차량 상시 출입 업체 차량		
11	일반방문차량	30분이내 600원 초과 10분당 300원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 및 정기권 미 발급 차량		20,000원 상한
12	행사참석/교수 세미나 참석 차량	1,000원/일	학생회 등 주체행사 참석차량 교수 공동연구 참석차량		팸플릿 제시
13	일반 영업용 차량	별도 계약	학교와의 계약에 따른 운영 대여차량		카세어링 차량 등
14	영빈실사용자	무료	영빈실 사용 신청 승낙 차량	신청서나 입금증 제시	
15	카드예치금	13,000원	RF 카드 발급 시 예치금 일만삼천원을 납부하고 카드 반환 시에는 이를 전액 환불 한다		

* 각 항 1.000cc 이하 소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50% 할인